#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2 발의연월일: 2021. 2. 24.

발 의 자:소병철・김정호・서동용

김병기・양정숙・홍성국

맹성규 · 임호선 · 김승남

김회재 · 김원이 · 민홍철

위성곤 • 하태경 • 김두관

이개호・주철현・오영환

홍정민 · 송갑석 · 이병훈

양향자 • 박재호 • 윤재갑

신정훈 • 이용빈 • 윤영덕

이형석 • 민형배 • 조오섭

서삼석 · 이만희 의원

(32인)

## 제안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순천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공약을 해왔으며, AIPH는 2020년 3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하는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함.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적으로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 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 라.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적으로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 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 다. 박람회 운영 · 관리 시설
    - 라. 전기 · 전자 · 통신 · 가스 시설

-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 요 도로 등 교통시설
  - 나. 홍보안내 시설
  - 다.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 라.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 · 운영하는 시설
  -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하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관리
  - 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
  - 4.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박람회 기념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운영사업 및 수익 사업
- ⑤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⑥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①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 ⑧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 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 2.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5.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의 수익금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

- 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 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 전협력금
  -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

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휘장사업
  - 2. 기념주화의 판매
  - 3. 시설임대사업
  -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 · 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 5.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 2.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부대사업
  - 3.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 사업
  - 4.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 5.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수 있다.
  -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수 있다.
-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 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6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잔여재산은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 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2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

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 제2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 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 제25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등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 및 도지사등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 ③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 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등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도지사등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제28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시행할 수 있다.
  - 1. 관할 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

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도지사등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도지사등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제30조(행위 등의 제한) 제2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

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 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8.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6.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 가
- 1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 원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의 지 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 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2.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② 산림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3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 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3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
  - 2. 제34조를 위반하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 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 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

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 · 보조·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실시설계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 법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